

#### 강의료지급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10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2.02.01.제정 2014.02.01.개정 2016.01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의 구분) 본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실험실습 · 실기를 병행하는 수업을 실습강의라 한다.
- 2. 제1호 이외의 평상수업 즉, 이론중심 강의를 보통강의라 한다.
- 3. 국내 · 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- 4. 책임시수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.
- 5. 전임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.
- 제3조(강의 책임시간수) ① 본교 교원의 강의 책임 강의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 단. 겸 임교원, 초빙교원, 강사는 별도로 한다.<개정 2019.07.16.>
  - ② 책임시간수에는 반드시 학과(계열) 담당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시간은 별도로 본다.<개정 2019.07.16.>
- 제4조(강의시수 산정) ① 강의시수는 수업운영규정 제15조(교원의 기본 강의시수), 제16조(책 임시수의 일부 면제 및 상한, 하한시수)에 준해 산정한다.
- 제5조(강사료의 지급과 계산) ① 본교의 강의 중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 하여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.
  - 1.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책임시수의 50% 초과한 시수까지 인정하나 부득이한 사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상한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2.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강의한 시간수에 의 하여 지급한다.
  - ②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이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외래강사가 담당한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인정 하다.
  - ③ 각종 강의료의 계산은 매학기 수업일수(15주)로 계산한다.
- 제6조(강의료지급액의 기준액)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 장이 정한다.



#### 강의료지급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10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- **제7조(강의료지급의 특례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중간고사, 기말고사 시험시간
  - 2.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 중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한 휴강
- **제8조(기타 강의료)** ① 초청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초청강사에 대한 경력과 지위 정도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.
  - ② 외국인교수·교환교수·초빙교수·월정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한다.
- 제9조(계절학기·방학 중 특강 강의료) 계절학기 및 방학 중 특강의 강의료는 정상학기 강의료 계산에 준하되 별도의 수당을 추가할 수 있다.
- 제10조(강의료의 지급일) 각종 강의료는 매학기를 4주씩 나누어 계산하며, 매월 5일에 지급하고,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
# 강의료지급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10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